

<부록1> 학급회 운영 규정

2. 학급회(자치활동) 운영 규정

- 2001. 7. 1. 제정
- 2017. 3. 1. 개정
- 2019. 8. 21. 개정
- 2022. 2. 1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학급자치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있다.

제2조【조직】학급자치회는 학년초에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활동 부서】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자치회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학급별로 학급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1인 1역할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의 부서별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예부 : 학습분위기 조성, 자율 학습 실천, 학습 자료 준비, 도서관리
2. 환경부 : 환경 미화, 화분 및 커텐 관리, 학급 비품 관리
3. 봉사부 : 절전, 폐휴지 수집 및 분리수거, 봉사 위문 활동, 청소 관리
4. 생활안전부 : 학급 생활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위생 및 양호 활동, 체육 활동
6. 총무부 : 학급 회계 관리 및 회의 운영 총괄
7. 홍보부 : 학급 활동 홍보 및 학급신문 제작
8. 교육급식부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4조【임원의 역할】학급자치회에는 지도위원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도·자문위원 : 학급 담임 교사는 지도·자문위원으로서 학급 자치회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문 역할을 한다.
2. 회장(반장, 1명) : 학급회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3. 부회장(부반장, 1명) : 회장을 도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4. 서기 : 학급자치회의 내용을 기록 기록한다.
5. 부장 : 각 부의 활동을 계획 수립, 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정·부반장을 각각 겸임한다.
2. 서기와 각 부장은 정·부반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여 학급 담임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학급 임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통솔력이 있고 학급원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임기】학급 임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급 임원이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선출한다.

제 3 장 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 개최】학급 자치회는 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 담임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제 발표】회장은 최소한 회의 1일 전에 의제와 토의 안건을 결정, 학급원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 설명】의제의 제안자나 기타 회원은 회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의제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기록】학급에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12조【회순】학급 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1. 성원 확인(서기)
2. 개회 선언(회장)
3. 국민의례(부회장)
4. 전주 회의록 낭독(서기)
5. 각부 활동 사항보고 및 반성(각 부장)
6. 의제토의
 - ① 의제발표(제안 설명)
 - ② 의제토의
 - ③ 실천 사항 토의 결정
7.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8. 지도 조언(학급 담임)
9. 폐회 선언(회장)

제13조【사회】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학급원들에게 발언권을 고루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발언】발언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여야 하며, 회의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한 뒤 이를 요약하여 '동의한다'고 명백히 발언하여야 한다. 동의는 다른 회원의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며 재청이 없으면 폐기된다. 동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은 칠판에 이를 판서하여야 한다.

제16조【개 의, 재개 의】개 의, 재개 의가 성립되려면 제12조의 절차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 의, 재개 의가 동 의와 유사하거나, 동의 개 의자가 찬 의를 표 했을 때에는 재개 의를 동의, 개 의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제17조【표 결】표 결은 재개 의, 개 의, 동의 순으로 하여야 하며, 표 결에 부 처진 의 안은 재 적 인 원 3 분의 2 이 상의 출 석 과 출 석 인 원 과 반 수 이 상의 찬 성이 있 어야 가 결 되 며 가 부 동 수 일 때 에는 부 결 된 다.

제18조【일 사 부 재 리의 원 칙】한 번 폐 기 된 안 건은 동 일 회 기 내 에 다 시 토 론 하 거 나 표 결 할 수 없 다.

제19조【결 의 안의 처 리】회 장은 결 의 안을 명 확 히 발 표 하 여야 한 다. 주 요 안 건은 학 급 대 의 원 이 전 교 대 의 원 회 의 에 서 건 의 하 고 그 결 과 를 학 급 회 보 고 하 여야 한 다.

제 4 장 학급회의 운영

제20조【부 서 선 택】학 급 원은 누 구 나 자 기 가 원 하 는 1 개 의 부 서 에 소 속 하 여 활 동 할 수 있 다.

제21조【활 동 계 획 수 립, 추 진】

1. 학년 초에 각 부 부 장 이 중 심 된 부 서 별 협 의 회 를 통 해 연 간 활 동 계 획 을 세 워 실 천 하 도 록 하 며, 활 동 의 결 과 는 학 급 회 에 보 고 하 고 협 의 하 며, 평 가 한 다.
2. 활 동 계 획 의 수 립 은 전 교 학 생 회 의 활 동 계 획 과 연 계 하 여 수 립 한 다.

제22조【학 급 회 활 동 상의 유 의 점】학 급 담 임 과 학 급 원 들 은 학 급 활 동 및 학 급 회 운 영 상 다 음 사 항 에 유 의 하 여야 한 다.

1. 학 급 활 동 과 학 급 회 는 확 일 적 이 고 형 식 적 인 운 영 을 지 양 하 고 학 급 별 로 특 성 을 살 려 창 의 적 이 고 다 양 한 활 동 이 이 루 어 지 게 한 다.
2. 사 제 동 행 활 동 을 원 칙 으 로 하 며, 학 생 들 의 자 발 적 이 고 적 극 적 인 참 여 를 유 도 한 다.
3. 학 급 회 의 주 제 는 학 교 에 서 제 시 하 는 연 간 계 획 을 참 고 하 되, 학 급 의 필 요 에 따 라 자 율 적 으 로 정 하 여

진행한다.

4. 학급별로 발표회, 학급잔치, 생일잔치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① 자주적,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관련되는 내용
- ② 소질 개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 ③ 발표의 형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화한다.(구술, 낭송, 합창, 독창, 연기, 연주, 웅변, 연설, 토론, 만화, 연극, 퀴즈 문답, 장기 자랑 등)
- ④ 발표 내용은 모방보다는 협동을 통한 창의적인 내용이 되도록 한다.
- 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선배 등을 특별 초청할 수도 있다.

5. 학급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급 담임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전교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회의 토의 결과나 제 문제가 학생회에 반영되고,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회를 통해 학급에 전달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6.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회 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상황 누가 기록에 참고한다.

<부록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 | |
|----------------------|---------------------|
| ◦ 2011. 6. 1. 제정 | ◦ 2012. 4. 1. 1차개정 |
| ◦ 2013. 3. 1. 2차개정 | ◦ 2013. 9. 4. 3차개정 |
| ◦ 2014. 4. 23. 4차개정 | ◦ 2015. 2. 9. 5차개정 |
| ◦ 2015. 8. 7. 6차개정 | ◦ 2016. 3. 1. 7차개정 |
| ◦ 2017. 3. 1. 8차개정 | ◦ 2019. 4. 22. 9차개정 |
| ◦ 2019. 8. 21. 10차개정 | ◦ 2022. 2. 18.10차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의거 학생 선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거】 삭제

제3조【선도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며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심의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 원하거나 사안에 따라 학생대표(2인)를 참석시킬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에서 추천 된 자로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칙 위반 사안 발생 시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사안이 경미하여 교칙의 학교 내 봉사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위원회(생활안전교육부 교사 전원 및 해당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4. 학생 표창 시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①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 : 학생선도사항 심의(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안전교육부 생활지도 전담교사 등)
 - ④ 삭제
 - ⑤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6.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5조【기능】 삭제

제6조【사안 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7조【학교장 재심 부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사무처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간사가 작성·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장 선 도

제9조【징계 종류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 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5. 「퇴학처분」은 학생의 등교 정지와 동시에 퇴학한다.

제10조【징계의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수업결손(정규수업)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학년 부장, 학년생활지도계,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선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및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교육법 시행령 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 ③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 ④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 ⑤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 ⑥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에 출석정지하게 하며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퇴학 처분」은 학생과 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① 산업체특별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전학
- ② 직업 알선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가, 나 항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퇴학 처분을 명할 때는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 대장에 ○○기관으로 전학·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6. 제 9조에 해당하는 선도 사실은 학생 선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7.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대상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1조【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제 18조【징계대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위대상은 하위대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표-1> 학생선도기준 참조

제12조【징계 심의 확정】

1.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3.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① 위원회 일시 및 장소
- ②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③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④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됨을 고지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1.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②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③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④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및 가중】

- 1.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선도 명령 이전에 교육계 내부상(교육부 장관, 교육감 표창), 외부상(시규모 이상 각종상), 특기상, 선행상,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 명령 내용을 경감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선도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은 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7조【사후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징계대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1. 학교 내 봉사

① 삭제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당해 관청으로부터 처벌된 자
- 나. 상습적으로 학교(교사)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 다. 교사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라. 학교에서 금지한 유흥장에 출입한자 또는 유흥장 취업자
- 마. 비품, 시설, 기타 공공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자
- 바. 교내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한 자
- 사. 학교 면학분위기를 습관적으로 훼손하는 자
- 아.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자.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0일~15일인 자
- 차.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 카. 습관적으로 이성간의 교제를 통하여 면학기풍을 흐리게 한 자
- 타.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자

2. 사회봉사

① 누적된 행위

- 가. 학교 내 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자
- 나. 기타 학생 선도 기준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나. 문신을 한 자
- 다. 삭제
- 라. 음주, 흡연으로 해당 학년의 지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마.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6일~20일인 자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3. 특별교육이수

① 누적된 행위

- 가. 사회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된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자
-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
- 다. 교풍을 문란케 하여 현저히 학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라. 단체행동, 수업거부 및 교사 기피 등의 선동을 한 자
- 마. 교사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과 지시를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
- 바. 음주 또는 상습 흡연으로 사회봉사 선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사.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21일 이상인 자
- 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① 누적된 행위
 - 가.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무단출결로 특별교육이수를 받고도 다시 무단출결이 10일 이상인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자
 - 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5. 퇴학처분
 - ① 누적된 행위
 - 가. 출석정지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무단출결 21일 이상)를 감행한 자나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불온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 나. 불온 전단 및 서적을 살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살포한 자
 - 다. 습관적인 본드, 부탄가스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흡입자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 결의된 자
 - 마. 무단가출,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학업 이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9조【징계학생 관리】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1. 학교 내 봉사

학교 내 봉사는 선도학생의 습관화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교시켜 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5일 이내, 1일 2시간 이내로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하며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
2.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생활 태도상 학교 내 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 좀 더 행동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담임교사가 관리하면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에서 조 종례 실시 후 귀가 조치)
3. 특별교육이수
 - ① 특별교육이수는 생활 태도상 사회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행동의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할 학생으로 가정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유관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써 그 행동의 개선 정도에 따라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시하며 담임교사가 선도 관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로 지도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①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단,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퇴학처분은 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교, 단체 생활로부터의 격리 조치이며,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또는 타교로 환경을 전환시키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준다. 이 경우는 퇴학처분 내용을 징계대장에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20조【상담 및 지도】선도대상 학생은 결연 교사 및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상담지도,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 결연된 학생은 상담 자원 교사 또는 학생이 상담하고 싶은 교사와 결연해 지도를 받게 한다.

1. 삭제
2. 삭제

제21조【학부모 지도】

1. 선도 처리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 후 해당 교사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한다.

제22조【학급담임지도】

1. 선도 기간 중의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 해당학년부장 및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확인을 받는다.
2. 요선도 학생의 학급담임은 선도 기간 중에 가정방문 및 기타 방법으로 항시 선도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유보】학생 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을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입학 및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1.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2.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은 1회로 제한한다.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27조【재심청구】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표-1> 학생 선도 기준

<표-1> 학생 선도 기준

| 구분 | 항목 | 사안내용 | 징계사항 | | | | | |
|--------------------------------------|---------------------------------------|---|------------------------|------------------------|------------------------------|-------------------------|----------|--|
| | | | 교내 봉사 (5일 이내) | 사회 봉사 (5일 이내) | 특별 교육 이수 (5일 이내) | 출석 정지 (10일 이내) | 퇴학 처분 | |
| 기본생활습관 · 준법 · 공공기물 관리 | ▶기본생활습관 | | | | | | | |
| | 1 | 용의 및 복장이 바르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 | | | | |
| | 2 |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 | | | | |
| | ▶준 법 | | | | | | | |
| | 3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 | 4 |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 5 |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 |
| | 6 |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 | ○ | ○ | |
| | 7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 | 8 |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 ○ | ○ | ○ | ○ | | |
| | 9 | 공문서(제증명, 식권, 납부금고지서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 ○ | ○ | ○ | ○ | ○ | |
| | 10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한 학생 | ○ | ○ | ○ | ○ | | |
| | 11 |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 | | | | |
| | 12 |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학생 | | ○ | ○ | ○ | ○ | |
| | 13 |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 14 | 학교 내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15 | 사회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 16 | 특별교육이수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17 | 경찰에 연행 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 ○ | ○ | | | |
| | 18 |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 | | ○ | ○ | ○ | |
| | 19 |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 | | | ○ | ○ | |
| | 20 |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 | 21 |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 |
| | ▶ 교내 정·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내용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 22 |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 ○ | ○ | ○ | ○ | | |
| | 23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 부착한 학생 | ○ | ○ | ○ | ○ | | |
| 24 |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 |
| 25 |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시에 부정을 한 학생 | ○ | ○ | ○ | ○ | | | |
| 26 |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 ○ | ○ | | | | | |

| 구분 | 항목 | 사안내용 | 징계사항 | | | | |
|---------------------------|--|---|------------------------|------------------------|------------------------------|-------------------------|----------|
| | | | 교내 봉사 (5일 이내) | 사회 봉사 (5일 이내) | 특별 교육 이수 (5일 이내) | 출석 정지 (10일 이내) | 퇴학 처분 |
| 집단 행위 | ▶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
| | 27 |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28 |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 29 |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 | ○ | | |
| | 30 | 불법 동아리 조직하거나 가입한 행위 또는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 한 학생 | | ○ | ○ | ○ | ○ |
| 31 |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 수업 및 시험 | ▶ 수업 학습 방해, 정기고사 부정행위(해당과목을 0점 처리 원칙) | | | | | | |
| | 32 | 수업 진행 또는 타인의 학습을 심히 방해한 학생 | ○ | ○ | ○ | ○ | ○ |
| | 33 |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 34 | 정기고사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35 |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36 | 시험문제를 탐지,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 | ○ | ○ | |
| 음주 약물 | ▶ 흡연, 음주, 약물 | | | | | | |
| | 37 | 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이나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 |
| | 38 | 마약류를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 | ○ |
| 39 | 교내외에서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 ○ | ○ | ○ | ○ | ○ | |
| 퇴폐 행위 · 정보 윤리 | ▶ 퇴폐 행위 | | | | | | |
| | 40 | 교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41 | 불량 서적·저장매체를 소지하거나 본 학생 | ○ | ○ | ○ | | |
| | 42 |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 | ○ | ○ |
| | 43 |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 | ○ | ○ |
| | 44 | 원동기를 탐승하고 등하교하는 학생 | ○ | ○ | | | |
| | 45 | 교외생활지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46 |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47 | 학생으로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 ○ | ○ |
| | ▶ 정보통신 윤리 | | | | | | |
| 48 | 정보통신매체 사용 시 정보통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
| 49 | 타인 아이디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 | ○ | ○ | ○ | ○ | ○ | |
| 50 | 문자, 이메일을 통해 타인을 음해한 행위 | | ○ | ○ | ○ | ○ | |
| 51 |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욕설, 비난의 글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 | ○ | ○ | ○ | ○ | ○ | |
| 근태 | 52 | 무단 근태를 상습적으로 한 자 | ○ | ○ | ○ | ○ | ○ |
| 기타 | 53 | 본 징계기준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 | ○ | ○ | ○ | ○ |

<부록3> 학생 용의·복장 규정

6. 학생 용의 . 복장 규정

- 2010. 12. 1. 제정
- 2014. 4. 1. 1차개정
- 2015. 2. 9. 2차개정
- 2016. 3. 1. 3차개정
- 2022. 2. 18. 4차개정

제1조【공통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학교가 정한 교복, 체육복만을 단정히 입는다.
2. 교복에 교표를 지정 위치에 부착한다.
3. 교복을 변형시켜서는 안 되며, 길이와 넓이를 줄인 짧은 치마, 쫄치마, 쫄바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4. 삭제
5. 학교생활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한다.

제2조【용의 규정】

1. 용의를 단정히 해야 하며, 과도한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다.
2. 두발은 모양새가 자연스러우며 균형을 이루는 단정한 형태로 한다(염색, 퍼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신체에 문신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제3조【복장 규정】

◆ 공통사항 ◆

1. 춘추, 하, 동복 착용기간은 당해 기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착용 방법은 규정에 의한다.
2. 바지는 일자형으로 하며 하단을 걸어서 자연스럽게 무릎까지 올라갈 정도로 한다.
3.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4. 동복 착용 방법
 - 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를 착용한다.
 - 나. 무채색 계열의 목 폴라티를 착용할 수 있다.

◆ 남학생 ◆

1. 춘추복 · 동복

- 가. 춘추복은 지정된 셔츠, 넥타이, 조끼를 착용하고, 셔츠는 단추를 채워 바지 안으로 넣어 단정히 입는다.
- 나. 동복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을 입는다.

2. 하복

- 가. 지정된 하복(생활복)을 착용하고, 상의는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다.
- 나. 삭제

◆ 여학생 ◆

1. 춘추복 · 동복

가. 춘추복은 지정된 블라우스, 리본(넥타이), 조끼를 착용하고, 블라우스는 단추를 채워 치마 속으로 넣어 입는다.

나. 스타킹 미착용 시 양말을 신는다.

다. 동복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을 입는다.

2. 하복

가. 지정된 하복(생활복)을 착용하고, 상의 끝부분이 치마 허리선 정도 내려오도록 한다.

나. 삭제

다. 스타킹 미착용 시 양말을 신는다.

제4조【가방 및 전자기기(휴대폰) 규정】

1. 삭제

2. 수업 중 전자기기(휴대폰) 사용은 제한한다.

3. 시험기간 중 전자기기(휴대폰)는 담임교사가 보관한 후 하교 시에 반환한다.

